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민원과장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·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9. . . .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폐지이유

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토지거래허가업무의 상위법인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(2016. 1. 19 제정) 제18조(이행강제금)에 포함되어 있어 「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1.19.)되면서 「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」 제124조의3(이행강제금)조항이 삭제(2017.1.17.)되어 위 조례는 실효성이 없음.

나.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부과기준은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이행강제금)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에 잘 나타나 있으며 다음과 같다.

- (1)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, 방치한 경우 :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- (2) 토지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: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
- (3) 토지 취득한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: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
- (4) 위 (1)~(3)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이행강제금)

(2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.

라. 입법예고기간 : 2019. 07. 29 ~ 08. 23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
부과·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
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민원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388

(관련법령 1)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8. 2. 9] [법률 제14569호, 2017. 2. 8, 타법개정]

- 제18조(이행강제금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-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.
- 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, 납부,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8. 3. 27] [대통령령 제28686호, 2018. 2. 27, 타법개정]

제1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,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농지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.

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: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
2.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: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

3.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: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: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

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(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)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⑤ 허가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(戒告)하여야 한다.

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·부과사유·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